

2022학년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항

※ 2022학년도 입학전형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입학전형일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01

모집정원

모집정원은 남녀 구분 없이 100명(학급당 20명, 5학급)이며,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함

전형 구분		모집 인원		
정원 내 (5학급, 100명)	자기주도학습 전형	일반전형 80명	100명	
		사회통합전형 20명		
정원 외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3명 이내		
	특례입학 전형	2명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약간 명		

02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내 용	일 시	장소 및 방법
온라인 원서 접수	2021.8.23.(월) ~ 8.30.(월) 17:00까지	http://www.jinhakapply.com
서류접수	2021.8.23.(월) ~ 8.30.(월)	우편 접수 (8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개별면담	2021.9.13.(월) ~ 10.29.(금)	장소 추후 공지
소집면접 대상자 발표	2021.11.15.(월) 17:00	본교 홈페이지
소집면접	2021.11.19.(금) ~ 11.20.(토)	본교 지정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2021.12.1.(수) 17:00	본교 홈페이지

※ 전형료

구 분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	소집면접 대상자	비 고
전형료	20,000원	10,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납부 방법	인터넷 접수 시 결제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전형료를 면제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창의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구분	지원 자격	
공통	<p>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5.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조기)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6. 「초·중등교육법」제27조 1항 및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제4조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 <p>※ 위 2~5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p> <p>※ 위 6항의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시행지침」에 따른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p>	
사회통합전형	<p>다음 1, 2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본교에서 수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회균등 대상자 2. 사회다양성 대상자(소득 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함. <u>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u>)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전형	정 원 외	<p>「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정대상자로서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특례 입학 전형	정 원 외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2호,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제2호.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p> <p>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p> <p>▶ 부모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체류기간은 1년 이상, 학생은 2개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p> <p>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p> <p>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p> <p>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p>
	정 원 내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1호,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p>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정 원 외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①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여부는 경기도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하는 사항임)</p>

[입학전형 개선안 반영 사항]

※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실시

(필요시 지원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를 입학담당관이 방문하여 지원자 및 추천 교사, 담임 교사와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6월 중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2단계 소집면접 문항에 대한 안내 및 예시 문항 공개 예정

□ 공통사항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제외)

1. 전형요소 : 학업소양, 탐구력, 핵심인성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잠재력과 수학·과학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평가

2. 전형절차 및 주요사항

가. 1단계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

1)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수학·과학 분야의 열정 및 학업소양, 탐구력, 핵심인성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 내신 성적은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최근 3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성취도 및 수강자 수)을 반영하되, 3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2) 개별면담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 서류평가와 개별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소집면접 대상자 선정

나. 2단계 (소집면접)

- 탐구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소집면접 대상자를 본교로 소집하여 면접 실시

다.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

□ 일반전형

1. 모집정원 : 80명

2. 전형방법 :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3배수(240명) 내외의 소집면접 대상자를 선정, 소집면접을 실시한 후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80명 선발

□ 사회통합전형

1. 모집정원 : 20명

2. 전형방법 : 서류평가와 개별면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집면접 대상자로 2배수(40명) 내외를 선정하되,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선발

가. 1단계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

- 1)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30명) 이내에서 우선 선발
- 2)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
- 3)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

나. 2단계 (소집면접)

소집면접을 실시한 후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20명 선발

- 1)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12명)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
- 2) 1순위 합격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음

□ 정원 외 전형

1.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전형(3명 이내)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수학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선발

2. 특례입학 전형(2명 이내)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수학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선발

3.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약간 명)

평가 및 면접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실시하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의 수학 능력을 판단한 후 학교장 의견서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 송부함. 최종 배치는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05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온라인 입력	등기우편 제출
공통	- 입학원서 1부 (www.jinhakapply.com 에서 온라인 가입하여 입력 후, 출력물에 학교장 직인, 지원자 및 보호자 서명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교사추천서(수학, 과학, 정보 교사 중 1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 영재기록사항 제외) 2부 ※ 단면인쇄, 간인, 학교장 직인, 원본대조필(확인자는 교감 또는 3학년부장교사) 필수 ※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는 최종 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2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 증명서 1부 (예)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등		<input type="radio"/>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고입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고입 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input type="radio"/>
조기졸업예정자	- 조기졸업(예정)증명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input type="radio"/>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	- 상급학교조기입학대상자증명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input type="radio"/>
학력인정학교 또는 타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주민등록등본 1부		<input type="radio"/>
사회통합전형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상 부, 모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포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각 1부 <표 1> 참조		<input type="radio"/>
정원 외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지청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input type="radio"/>
	특례입학 전형	- 특례입학 지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기타 제출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공지사항에 탑재함	<input type="radio"/>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의뢰서 (본교 소정 양식)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본교 소정 양식)	<input type="radio"/>

<표 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아래 표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 1부 (본교 소정 양식)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공지사항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1부 (등본상 부, 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선발 순위	지원자격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1 순 위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②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주민센터 구청, 동주민센터 구청, 동주민센터
	③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학교, 교육청
	④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기타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관할 보훈지청
	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⑥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비지원대상자	-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	학교
	⑦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구, 차차상위 계층)에는 포함되지 <u>않으나</u>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선정 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객관적 증빙서류 (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1부) [객관적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등 관련 기관

※ 2,3순위 지원자격 적용기준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공지사항]에서 확인

	소득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증빙 서류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발급처
2,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国民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확인서발급 - 방문, 온라인, 팩스 등

선발 순위	지원 자격	제출 서류
2 순위	① 소년·소녀가장 (형제·자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② 조손가정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순직확인서 1부
	⑤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 시) 또는 여권 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 1부(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3 순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현 재학 중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첫째 자녀부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현 재학 중학교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근로복지공단)
	⑥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 모든 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특례입학대상자와 고입 검정고시합격자의 자격 검증 관련 서류 제외)
-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 등기우편 제출 서류는 **8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기재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간인,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및 제출 방법에 대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①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대회 등 입상 실적,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②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시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③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 시험 점수

※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의 ①, ③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전형 단계의 최하 등급 처리, ②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 처리

- 추천 교사가 다음의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포함하여 교사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중학교에 추천서 재작성을 통보하며, 해당 중학교에서 불응하는 경우 당해 학생은 전형에서 배제됨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① 올림피아드(KMO 등), 학교 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②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개인 정보 관련 사항 등
- ③ 학생의 교과 성적,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등
- ④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입학 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교사 추천서의 작성은 **해당 중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 과학, 정보 교사로 한정함**

※ 해외에서 9학년(18학기)을 마치고 지원하는 학생과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지원자가 재학했던 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사 추천 가능
- 지원자가 다니는 국내의 종교기관 지도자
- 국내의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전문상담가 등 (단, 학원 강사 등 사교육기관 관계자, 지원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1. 온라인 원서 접수 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를 반드시 본교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하여야 함
2.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이중지원 금지

- 전기고등학교는 전형 시기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음
- 전기고등학교 합격 시 후기고등학교(외고, 국제고, 자율형 공·사립고, 일반고 등) 지원 불가

3.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입학 전형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5. 본교 합격자는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사항

본교는 과학, 수학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의·치의·한의·약학 계열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의·한의·약학 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 1) 본교 교원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모든 대학의 진로 진학 지도를 실시하지 않음
- 2) 해당 학생이 재학 중 받은 장학금 등 지원액을 회수함
- 3) 졸업 시 각종 수상 및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작성과정에서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7. 기타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및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함